제88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인천항 ·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인천항, 경인항, 인천대교 부근 등에서 최고속력 제한 (신설) ㅇ 인천항 및 경인항 항계 내 구역별 항행최고속력 규정 * (인천항) 신항부두 항행 시 ▲제3항로 해역 중 동경 126° 34' 20.0 " 동측 해역 12노트 이하 ▲인천신항항로 전 해역 8노트 이하 * (경인항) ▲영종대교부터 경인항 항계 사이의 제1항로 전 해역 10노트 이하 ▲경인아라뱃길을 제외한 항계 내 모든 수역에 대한 최고속력 제한 강화(12노트→8노트 이하) * (인천대교 부근) Suezmax급(13만 ~ 17.5만 DWT 급 유조선) 유조선 ▲입항 시 7노트 이하 ▲출항 시 10노트 이하 ▶ 인천항 ·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6조	1.비중요
2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행위제한 추가(강화) ㅇ 투자계약시 투자기업이 아닌 이해관계인(창업자, 대주주 등)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(다만, 고의·중과실 있는 경우 예외) ▶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2.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(강화) ㅇ 법 제39조제2항(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)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별 양정기준 신설 * 처분대상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▶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보고 및 비밀유지의무 등(신설) ㅇ 지원대상 선정,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관련자의 일반적인 의무 이행사항과 적법절차 준수할 것을 밝히고 사업수행 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 ㅇ 사업계획의 변경,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, 그 밖에 수행실적 등 보고 요청 사항과 수행계획 대비 실적, 사업 목표달성 정도의 보고와 점검, 평가에 따른 조치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의 제출과 보관사항을 제시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, 제29조, 제32조, 제33조, 제36조 2.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사업비 관리(신설) ㅇ 사업 관련자가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른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관리 ·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법과 집행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절차 규제에 해당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, 제23조 3.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(신설) ㅇ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성과물 활용과 지원사업 결과표시를 의무화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행위제한 추가(강화) ㅇ (연대책임 요구) 투자계약시 투자기업이 아닌 이해관계인(창업자, 대주주 등)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(다만, 고의·중과실 있는 경우 예외) ㅇ (선관주의 의무 위반) 조합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조합이 얻어야 할 이익을 제3자가 얻도록 하는 행위 ㅇ (규약미준수)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▶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2. 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(강화) ㅇ 법 제52조제3항(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)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별 양정기준 신설 * 처분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 ▶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	1.비중요 2.비중요
5	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사업 등 폐지시 액화석유가스 폐기 증명서류 제출의무 부과(신설) ㅇ LPG사업자가 해당사업 폐지 신고 시 LPG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으로써, 폐지된 LPG시설의 안전성 확보 ▶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(강화) ㅇ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개선(종전: 6개월 1회 이상 → 개선: 공급시 마다) ▶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3. 가스배상책임보험료 할증 요건 정합화(강화) ㅇ 보험금액 할증 내용을 공급자 안전점검기준과 정합화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 ▶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	
6	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(강화) ㅇ 제16조(계기착륙시설), 제17조(전방향표지시설)를 국제표준(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협약 부속서 10)과 부합하도록 주파수허용편차 및 전계강도를 기술기준에 추가 ▶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,제17조	1.비중요
7	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(강화) ㅇ 관리사무소장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매월 장부와 예금잔고 대조 의무 부과 ▶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선정결과 공개범위 확대(강화) ㅇ 낙찰자 선정결과 공개내용에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, 주소, 대표자, 연락처 외에 '사업자등록번호' 추가 공개 ▶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2.적격심사제 평가주체 다양화(강화)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 ㅇ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에 입주자등을 1명 이상 포함 ▶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3.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시 이해관계인 참석 의무화(강화) ㅇ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시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 ▶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 4.참가자격 제한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(강화) ㅇ 제출서류에 참가자격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함으로써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필요시 요청 가능하도록 함 ▶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,제27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관리처분인가시 공사 계약서 제출(강화) ㅇ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▶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	1.비중요
10	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민간동물보호시설 준수기준 마련 · 신고기준 부과(신설) ㅇ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규모 구체화, 신고 사항 중 ①보호시설 운영자의 성명 ②명칭 ③주소 ④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를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' 으로 규정(변경시 신고 필요) ▶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 2. 동물실험시행기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자격 · 업무 · 교육의무 부과(신설)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기관의 규모, 전임수의사의 자격 · 업무 등 명확화 ▶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3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장소 지정(신설) ㅇ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대상, 장소 및 기준 지정 ▶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	1.중요 2.중요 3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민간동물보호시설 준수기준 마련 · 신고의무 부과(신설)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·변경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(시설기준 확인자료, 인력현황, 운영계획서 등), 시설 및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▶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2.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의 자격 · 업무 · 교육의무 부과(신설) ㅇ 시행령에서 위임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▶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3. 등록대상동물의 관리강화 의무 부과(인식표 등)(신설) ㅇ 이동장치는 등록대상동물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규정, 등록대상동물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에 준주택 추가,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는 인식표 재질 및 규격 등을 규정 ▶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4.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마련 및 교육의무 부과(신설) ㅇ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인력기준 규정 및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의 교육기준 신설 ▶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기준 신설(신설) ㅇ 직접구매 해외식품등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· 성분 지정기준 마련 ▶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2.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(신설) ㅇ 해외식품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성분 · 원료 지정으로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해당 성분 원료가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 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ㅇ 위해식품등 회수, 압류·폐기를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등의 행위 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▶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	1.비중요 2.비중요